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807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. 시행)에 따라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상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「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」 상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로 통·폐합되어,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법 시행령 상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양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신청의 접수,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기능·역할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물발전 위원회를 활용(안 제2조제2항)

법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「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로 통·폐합됨에 따라 법령상 기존

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수행토록 함.

나.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(안 제3조내지 제6조)

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위원 해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.

다.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(안 제22조제1항)

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(법 제13조)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(법 제14조)과 관련하여 해양교육센터가 신청의 접수부터 지정·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(법 제8조제2항)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, 제도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”를 “「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”로 한다.
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비영리법인”을 “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양교육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
4.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

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 단체) ① (생 략)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1. (생 략) 2.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 육문화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 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법인 또는 단체	제2조(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 단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제7 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 회----- ----- -----
제3조(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의 위원(이 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(이 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성별 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다. 1.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 육관광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 족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	<삭 제>

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
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
는 사람 각 1명

2.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
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
람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
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
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
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
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
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
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
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
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
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

<삭 제>

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<삭 제>

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

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
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
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
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
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
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
또는 감정(鑑定)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
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
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
있던 경우

5.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
안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
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
어 있었던 경우

6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
된 처분 또는 부작위(不作爲)
에 관여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
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
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
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
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

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임 등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관련 학술연구,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

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3. · 4.</u> (생략) ② (생략)	<u>른 해양교육센터---</u>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</u> <u>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</u> <u>및 신청내용의 확인</u> 4. <u>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교육</u> <u>프로그램의 인증 및 유효기간</u> <u>연장과 관련한 신청의 접수</u> <u>및 신청내용의 확인</u> 5. · 6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26